

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 
운용계획변경안  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03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2. 6. 1.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  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-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3호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# 1) 제안이유

- 가.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2023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상 지출계획의 '예치금'이 당초 금액 대비 80% 초과되었음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20% 초과 변경시 시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한바,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# 2) 주요내용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473백만원에서 381백만원증가한 854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 수입계획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23년(A) 당초예산	'22년(B) 결산반영	증 감 (B-A)
계	1,473,476	1,854,724	381,248
예치금	376,778	758,026	381,248
회수			
일반회계	100,000	100,000	-
전입금			
이자수입	964,858	964,858	-
기타수입	31,840	31,840	-

〈 지출계획 〉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(정책사업)	'23년(C) 당초 예산	'23년(D) 변경(안)	증 감(D-C) (증감률)
계	1,473,476	1,854,724	381,248
비용자성 사업비	980,000	980,000	-
기본경비	20,000	20,000	-
예치금	473,476	854,724	381,248 (80.5%)

다.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/ 편성목	당 초 ( A 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C=B-A)	증 감 률 (D=C/A)
지출합계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일반예산 (재무활동)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보전지출 (성평등기금)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여유자금 예치 (성평등기금)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예치금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
### 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3억 8,1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(3억 8,1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,
 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<sup>2)</sup>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(지출계획)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80.5%, 3억 8,1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, p.296

〈표 3-1〉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 C=B-A )	증 감 륜 ( D=C/A )
지 출 합 계	473	854	381	80.5
재 무 활 동	473	854	381	80.5
보 전 지 출 ( 성 평 등 기 금 )	473	854	381	80.5
여 유 자 금 예 치	473	854	381	80.5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성평등기금 지출계획, ②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○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성평등기금의 수·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3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0조(기금의 용도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
2.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
3.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
4.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 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## 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###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  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  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  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  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  
박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  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#### 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##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**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**

**VI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3. 6.30.)**

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9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2023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예치금'이 당초 금액 대비 80% 초과되었음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20% 초과 변경시 시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한바,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473백만원에서 381백만원증가한 854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- 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〈 수입계획 〉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3년(A) 당초예산	'22년(B) 결산반영	증감 (B-A)
계	1,473,476	1,854,724	381,248
예치금회수	376,778	758,026	381,248
일반회계 전입금	100,000	100,000	-
이자수입	964,858	964,858	-
기타수입	31,840	31,840	-

### 〈 지출계획 〉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 (정책사업)	'23년(C) 당초 예산	'23년(D) 변경(안)	증감(D-C) (증감률)
계	1,473,476	1,854,724	381,248
비용자성 사업비	980,000	980,000	-
기본경비	20,000	20,000	-
예치금	473,476	854,724	381,248 (80.5%)

## 다.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사업/ 단위사업/ 세부사업/ 편성목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 C=B-A )	증 감 륜 ( D=C/A )
지출합계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보 전 지 출 ( 성 평 등 기 금 )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여유자금 예치(성평등기금)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예 치 금	473,476	854,724	381,248	80.5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협력팀 김소현 (☎ 2133-5025)